

**환경부
보도자료**

- ☐ 05. 5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5 쪽

2005년 6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

대기보전국	김성동 과 장	전화	02-2110-6788
대기관리과	류은경 사무관	(메일)	dispara@me.go.kr

3. 시화·반월, 울산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

◇ 시화·반월 국가산업단지, 미포·온산 국가산업단지 등 6개 산업 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

- 해당 시·도지사는 주기적으로 악취발생실태 조사, 필요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

□ 「악취방지법」이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‘울산미포 국가산업 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’, ‘시화국가산업단지, 반월국가산업단지,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(포송지구)’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각각 울산광역시 및 경기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3.17 일 및 5월16일 각각 지정하였다.

□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안의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방지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,

○ 시·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보다 1~5배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지정 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(분기 1회 이상)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
※ 악취관리지역 지정 : 시·도지사가 악취민원이 지속되고, 지역 내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정

□ 환경부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금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지원과 악취방지기술 개발 및 보급방안을 마련하고,

○ 악취발생원(배출시설 등)의 DB구축 및 관리요령 등 지자체의 악취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, 사업장 악취업무 담당자에게 악취관리 업무편람을 제공할 계획이며,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악취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할 예정이다.

□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의 대표적인 예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.

구분	2003년도	2004년도
조성면적(m ²)	32,232	48,113
식재수목(본)	수목: 22,487 지장목 이식 : 3,132 지피식물 : 19,085m ²	수목: 75,766 지피식물 : 275,092본
사업비(백만원)	1,920	4,800

<참고자료>

붙임 : 1.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

2.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

〈붙임 1〉

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

□ 울산광역시

- 지정일자 : 2005. 3. 17
- 지정지역
 -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전지역 : 46,271천m²
 - 온산국가산업단지 전지역 : 24,659천m²

□ 경기도

- 지정일자 : 2005. 5.16
- 지정지역
 - 반월국가산업단지 전지역 : 15,374천m²
 - 시화국가산업단지 전지역 : 20,867천m²
 -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전지역 : 1,470천m²
 -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송지구 전지역 : 6,327천m²

〈붙임 2〉

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

1. 복합악취^{주1)}

구분	배출허용기준(회석배수 ^{주2)})		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(회석배수)	
	공업지역 ^{주3)}	기타지역	공업지역	기타지역
배출구	1000 이하	500 이하	500 ~ 1000	300 ~ 500
부지경계선	20 이하	15 이하	15 ~ 20	10 ~ 15

2. 지정악취물질

구 분		배출허용기준(ppm)		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(ppm)
		공업지역	기타지역	공업지역
1	암모니아	2 이하	1 이하	1 ~ 2
2	메틸머captan	0.004 이하	0.002 이하	0.002 ~ 0.004
3	황화수소	0.06 이하	0.02 이하	0.02 ~ 0.06
4	다이메틸설파이드	0.05 이하	0.01 이하	0.01 ~ 0.05
5	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	0.03 이하	0.009 이하	0.009 ~ 0.03
6	트라이메틸아민	0.02 이하	0.005 이하	0.005 ~ 0.02
7	아세트알데하이드	0.1 이하	0.05 이하	0.05 ~ 0.1
8	스타이렌	0.8 이하	0.4 이하	0.4 ~ 0.8
9	프로피온알데하이드	0.1 이하	0.05 이하	0.05 ~ 0.1
10	뷰티르알데하이드	0.1 이하	0.029 이하	0.029 ~ 0.1
11	<i>n</i> -발레르알데하이드	0.02 이하	0.009 이하	0.009 ~ 0.02
12	<i>i</i> -발레르알데하이드	0.006 이하	0.003 이하	0.003 ~ 0.006

- 주 1) 복합악취 :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
- 2) 희석배수 :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 희석 배수
- 3) 공업지역
- 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·일반지방산업단지·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
-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(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한한다)